

1. 개정이유

영화업 및 비디오물영업의 폐업신고 관련, 관할 행정청 간 정보공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폐업신고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영화업신고증, 영화상영관등록증, 영화상영신고증명서 및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화업 및 비디오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안 제5조의2제4항, 제24조제3항)
- 나.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시 첨부 필요서류 중 ‘분실사유서’를 삭제하고, 영화업신고증, 영화상영관등록증, 영화상영신고증명서 및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서식 상 ‘재교부 사유’ 기재란을 삭제 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별지 제4호, 제12호, 제18호, 제27호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예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 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대표자)		

영화원 제목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 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신고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기존신고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등록일)·
신고번호(신고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증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기존신고증 또는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을 ----- -----. <삭 제> <삭 제>
제5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 ③ (생략) <신 설>	제5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정보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② (생략) <신 설>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